



기후변화협약의 발효는
향후 우리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전주곡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우리는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말이 더욱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최근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과거의 어느 것보다도 빠르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대처하며 더 나아가 활용하느냐 함에 따라 한 개인이건 국가건 흥망의 기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제3의 물결을 쓴 미래 학자 앤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에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대부분은 결코 서로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직면한 변화가 혁명적인 것이라고 인식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변화를 옳게 유도해 가고 조정하려면 역사의 흐름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안목이 필요 한 것이다. 그렇게 못할 때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으며, 흥망성쇠의 기로에서 자칫愚를 범할 염려가 있는 것이다.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166개국의 서명으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으며, 50개

기후변화협약의 과제와 전망

기후변화협약의 발효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과학기술 분야,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국제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정보·통신 시대등 일련의 현상들은 서로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는 산업 주의의 종언과 새로운 문명의 출현을 뜻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문명의 도래는 수천 년에 걸쳐 일어 났던 제1의 물결, 3백년 밖에 걸리지 않은 제2의 물결에 따른 변혁에 비해 고작 수십년 내에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국 이상이 가입하여 작년 발효 조건이 충족되어 94년 3월 21일 공식적으로 발효 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현재로는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한 것이며, 향후 협상의 결과에 따라 담겨질 후속의정서의 내용에 따라 우리에게 구체적인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협약의 발효를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될 것이다. 혁명도 한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말처럼 이 협약의 발효는 향후 우리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전

郭一天

한국환경기술개발원
<지구환경연구부 책임연구원>

주곡이라고 봐야 하겠다. 협약 그 자체만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구환경보호의 큰 흐름속에서 접근해 볼 때 협약의 발효는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지구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선진국들은 지구를 하나의 우주선(*Spaceship Earth*)이라는 개념하에 환경에 관한 한 하나의 국가를 이루하려는 환경세계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두고 일부 개도국 및 후진국들은 환경제국주의(*Eco-Imperialism*)라는 용어를 써가며 반대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나, 큰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환경세계주의의 (*Global Environmental Federation*)의 개념이란 예를 들어 美國의 경우 州마다 각각 상이한 환경규제기준이나 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으나,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 기준은 어느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는 규칙을 정하는 것처럼 각국의 상이한 자연의 수용 능력, 기술적 대응능력의 차이, 경제 수준등의 격차 등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최저 환경기준의 설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최근 우루과이 라운드(*UR*)의 타결로 세계는 국경 없는 자유 무역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나, *UR*의 과정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환경문제의 보완 및 지구환경보전의 구체적인 수단으로 무역제재의 강구 등 세계는 무역과 환경의 연계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1월 출범할 세계 무역기구(*WTO*) 산하에 무역과 환경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된 바 있으며 올해중 이 위원회의 활동프로그램(*Work Program*)을 토의할 정도로 이 부문의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무역과 환경의 연계문제에 대해 선도적

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OECD*는 최근의 워크샵에서 공정 및 생산방법(*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 PPMs*)에 대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토의하고 이를 실행키 위한 논리적 타당성 및 구체적인 방법들을 토의하기 시작하였다. 종래의 국제환경규제의 대상이 되어 왔던 제품의 소비에 대한 규제에서 점차 생산공정 및 방법상에 대한 규제가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환경 기술의 개념이 종래의 사후처리기술(*End of Pipe Technology*)에서 생산 공정의 혁신 등 *Clean Technology*의 도입 등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시하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PPM*에 준한 환경 규제의 전전은 모든 생산공정의 기초가 되는 에너지 및 자원을 효율적 이용이 주요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될 기반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지구촌의 환경 보전의 움직임은 모든 커다란 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흐름은 이미 거대한 세계사의 물결로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발효된 기후 변화협약도 이러한 커다란 물줄기에 힘입는다고 볼 때 향후 이 협약이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것인지 자못 커다른 관심이 간다. 혹자는 다른 분야는 모르더라도 에너지 관련 분야는 美國의 에너지 소비 형태가 바뀌지 않는 한 커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또한 장담할 일도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에 대한 규제가 아니더라도 각 제품 공정상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에 대한 규제 등은 규제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최근 빈번히 거론되고 있는 ISO라는

환경마크제도와 같은 환경규제제도의 제정 움직임 등은 에너지 이용의 합리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일련의 조처들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향후 기후변화 협약의 구체적인 진전 사항에 대한 예측과 상관없이 이제 우리는 이 기후변화 협약의 기본정신과 추구하는 변화의 방향을 커다란 지구환경 움직임 속에서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이는 작게로는 협약 자체에 대한 대비가 될 것이며, 넓게로는 환경보전의 의무를 다하는 기업과 국가만이 자유무역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최선의 대비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협약에의 대비로 제기되는 제반 조처들은 우리의 국내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어차피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다.

가장 우선되는 기후변화협약 대응책은 무엇보다도 에너지 이용의 효율을 높이는 것임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이를 이루기 위한 제반 조치로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 대별되는 수단이 생각된다. 그 첫째가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의 도입 및 시행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시장경제적 접근에 의한 자율적인 조처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다름아닌 환경비용의 내부화, 즉 에너지 가격의 환경비용 반영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처들은 우리에게 이미 낯설지 않은 조처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처들은 다시 한번 거론하는 이유는 이러한 조처들이 얼마만큼의 기대 효과를 가져다 주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하여야 하겠다는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하여 강력한
규제정책을 도입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장경제적
접근에 의한 자율적인
조처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의 발효를
하나의 사건으로
독립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지구환경문제의 큰
흐름의 파생적 사례로
인식할 때 그 의미는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것이다.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강력한 규제제도, 적절한 시장경제적 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운용이 적절치 못할 경우 그 제도의 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에너지효율개선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 키 위하여는 규제나 시장경제적 접근이나 가 더욱 큰 과제가 된다. 즉, 해당기업에 대한 규제와 지원대책이 병행되어 시행되어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가격의 적절한 조정이 없이 어떠한 제도나 규제 수단도 효력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의 발효를 하나의 사건으로 독립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지구환경 문제의 큰 흐름의 파생적인 사례로 인식 할 때 그 의미는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